##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43

발의연월일 : 2022. 11. 2.

발 의 자:정우택・구자근・양향자

윤창현 • 태영호 • 이인선

이만희 • 지성호 • 정희용

하태경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이태원 핼로윈 축제 등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1).

###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11제1항 중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으로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확실한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 전관리조치) ①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 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안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리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 제로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 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 (3) ----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제1항 또는 제2항-----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다.

### <신 설>

⑤ 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

•
,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⑤</u> 제4항
·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
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최지를 관
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
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u> </u>

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	
다.		